

##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 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4. 1. 15.

# 영 주 고 용 노 동 지 청 장



-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- 근 거: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제 29조,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 21조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정0영	01.02.17.	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자 종료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-5,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미제출 -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 미달	취업지원 종료(중단)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3년간 제한	폐문	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 78번길 23, 리버사이드 301호

4. 공고기간: 2024.1.15. ~ 2024.1.29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영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김선미(Tel 054-639-114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